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21느합10025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
청 구 인 전명분 (610223-2258417)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 103동 1601호 (자은동, 센트럴빌리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상 대 방 1. 임영섭 (810117-1908118)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81번길 19-2, 303호 (덕산동, 덕산빌라)
2. 임종섭 (830206-1841013)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80길 19-4 (독산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신은정

주 문

1. 피상속인 망 임채익(570910-1908121)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40%로 정한다.
2. 피상속인 망 임채익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15,078,0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임채익(570910-1908121,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피상속인 : 망 임채익, 2021. 4. 12. 사망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 배우자 : 청구인(2010. 12. 21. 혼인신고)

○ 직계비속 : 상대방들[모친 이재화(피상속인과 1980. 9. 19. 혼인신고, 1999. 2. 11.

이혼판결 확정)]

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상속인	법정상속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1	청구인	3/7	배우자
2	상대방 임영섭	2/7	직계비속
3	상대방 임종섭	2/7	직계비속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순번 3번 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심문종결일 당시 가액은 3,3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나. 청구인은,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8,000,000원, 퇴직급여채권 6,655,320원)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살피건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게 되고, 가분채권인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78,000,000원)과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퇴직급여채권의 가액(6,655,320원)이 같은 목록 순번 1~3번 기재 상속재산 가액(합계 87,955,320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각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상속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7~10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의 표시	상속재산 가액(원)
1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8,000,000
2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퇴직급여채권	6,655,320
3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자동차	3,300,000
합 계		87,955,320

3.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 156 결정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15, 27, 28,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유안타증권, 한국신용정보원, AI A생명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1999년경 이혼 후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2010. 12. 21. 혼인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약 11년 이상 청구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고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은 모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점, ④ 별지 순번 1번 기재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점, ⑤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이 이체하여 준 돈 등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증권 계좌에서 마련한 돈으로 별지 순번 1번 기재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78,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한 점, ⑥ 피상속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납부한 후 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보험금 중 일부는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인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점, ⑦ 피상속인은 2009년경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 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부부 소득과 재산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상속인은 2019년경부터 전립선암으로 투병하고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정성껏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상속인은 1999년경 상대방들의 친모와 이혼하고 그 후 청구인과 재혼하면서 자녀인 상대방들과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에 비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청구인의 기여방법 및 정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없음)

항목	금액(원)
상속재산(A)	87,955,320
청구인의 기여분 가액(A × 0.40)	35,182,128
간주상속재산(B = A × 0.60)	52,773,192

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법정 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원 미만 반올림)

2)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액(소수점 이하 6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당사자	법정 상속분액(원)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액(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청구인	22,617,082 (= B × 3/7)	35,182,128	57,799,210	0.65714
상대방 임영섭	15,078,055 (= B × 2/7)	-	15,078,055	0.17143
상대방 임종섭	15,078,055 (= B × 2/7)	-	15,078,055	0.17143
합 계	52,773,192	35,182,128	87,955,320	1

5.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 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상속인들의 관계 및 구체적 상속분,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상속재산 관리 및 보유 현황, 만약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될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산금으로, 상대방들에게 각 15,078,0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2. 12. 5.

재판장

판사

김

은

정



판사

전

보

경



판사

석

동

우



별지

목 록

1.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자은동) 센트럴빌리지 103동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8,000,000원
2. 피상속인이 2021. 4. 13.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퇴사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채권 6,655,320원
3. 아반떼(AVANTE) 자동차
등록번호: 19수1659, 차종: 중형 승용, 용도: 자가용
형식 및 모델연도: MD4DBH-G 2015
끝.

정본입니다.

2022. 12. 6.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 권득오

